

이사회 의사록

회 의 명 : 2018년도 임시이사회(제3회)
개 최 일 시 : 2018년 5월 29일(화), 14:00 ~ 17:20
장 소 : 코레일 영등포역 3층 회의실(누리로 3호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출 석 이 사 : 총원 23명 중 21명(위임장 9명 포함)
(붙임 “이사회 참석자 명단” 참조)

본 협회 회장 남상욱은 정관규정에 따라서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다음의 토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다.

□ 토의안건

(상세내용은 2018년도 임시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운영 개선(즉시보고제도 도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등)

- 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 부여
- 중대위반사항의 즉시보고(신설, 법25조제2항)

②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점검 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즉시 수리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를 자동으로 발하지 못하는 경우
2. 가압송수장치(소방용 펌프) 고장으로 소화수를 자동으로 토출하지 못하는 경우
3. 배관의 파손·누수 등으로 인하여 배관에 설치된 밸브류를 차단·폐쇄하여 소화수를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시 수리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

□ 토의결과

- ①심각한 중대한 피해사항 발생을 고려하면, 점검사항 중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1호의 경우 수신기의 오동작까지 적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함.
- ②즉시보고 사항 중 제4호의 경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보다는 모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시행령은 삭제하고 제4호에 가스계소화설비에서 용기내 약제가 없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의견 제시

2.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방식 개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통보 방식을 사전 통보방식으로 개선(사전 배치신고)

현행	개정안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② (생략)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실시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기 전까지 ----- -----자체점검대상-----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토의결과

- ①선배치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표달성이나 실익이 없기에 현재와 같은 10일내 배치신고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님.
- ②선배치 신고를 할 경우 실무에서는 점검인력의 결근, 사고, 애경사 등 점검업체의 사정이나, 관계인의 점검일자 변경요구에 따라 점검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 경우 배치신고를 수정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배치신고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점검업체와 협회의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될 것임. 동시에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정이 안 되므로 점검일과 점검인력 배치통지가 상이하여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임.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치가 불가피하다면 선배치신고 이후 3일~5일간 수정기간을 인정하여 해당기일 내 관리업체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3.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기존 30일 이내에서 점검 후 7일로 제출기간 단축하여 불량사항 신속정비

□ 토의결과

- ①법25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중대위반사항의 즉시보고제도가 도입된다면, 결과보고서의 7일 이내 제출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서식 변경이 없이 기간만 7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방대한 서식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또한 보고서 서식의 변경 없이 기간만 단축할 경우 보고서 작성이 부실해질 우려가 높아 거짓점검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 ②만약에 제출일자를 7일 이내로 조정하려면 날짜에 맞는 선 서식변경 후에 기간변경을 하여야함. 또한 점검대상물의 규모나 용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보고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4. 기타 개정내용

1)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3조(과태료)
- 피난·방화시설을 훼손·변경·물건적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벌금 300만원 → 과태료 200만원)

현행	개정안
제53조(과태료) <신설>	제53조(과태료)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 12의2. (생략) <신설> 13. (생략) 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13.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토의결과

- ①배치신고를 통한 온라인으로 점검 내용을 신고하고 있으며, 점검보고서 제출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점검 내용을 소방당국에 제출하고 있기에 점검기록표는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행정임.
 - ②점검기록표는 배치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만든 제도로서 현재는 불필요한 대표적인 규제로 과태료 대상도 의미가 없으며 점검기록표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함.
- 2)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대상 확대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1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의 별표 1
 - 종합정밀 점검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5,000㎡이상 → 스프링클러설치 대상(면적기준 삭제)

현행	개정안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u>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u>(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u>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u>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 -----. 1) ----- ----- ----- <u>특정소방대상물</u>(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단서삭제>

□ 토의결과

- ① 원칙적으로 대상 확대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다만, 관리사의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에도 관리사를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임.
- ② 따라서 이는 법 개정애 따른 증가하는 대상건수를 조사하여 필요한 관리사 인력을 검토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여야 할 것임.

3)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완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행정처분의 기준)의 별표 8

○ 관리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 2년간 → 1년간(관리업과 동일하게 완화)

현행	개정안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u>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u>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u>최근 1년간</u> ----- ----- ----- ----- ----- ----- -----

□ 토의결과

업체와 관리사의 행정처분 기간을 같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의견 없음

4)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49조(벌칙) 및 제50조(벌칙)

- 관계인의 처벌 강화 → 관계인 인식전환을 위한 처벌기준 강화
- 관리업자 :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미비, 중대 위반사항 미보고 → 벌금 300만원 이하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 ----- ----- -----.
1. 삭제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제1의2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 -----.
1. ~ 5의2. (생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설>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7. -----

현행	개정안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u>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u> <신설>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신설> <신설> 9.·9의2. (생략) <신설> <신설> 10.·11. (생략)	----- 관계인에게 필요----- 8. -----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개선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 7의2.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삭제> 9.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9의2. 제2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폐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11.·11의2. (현행 제9호 및 제9호의2와 같음) 9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소방시설등 점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12.·13.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 토의결과

- ①과태료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벌금으로 상향하여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
- ②특히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장의 사소한 미비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관리업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조항으로 불가함

붙임: 이사회 참석자 명단

협회 직책	성명	소속 회원사명	참석현황 (참석 O, 불참 X)	비 고
회장	남상욱	(주)윤영방재엔지니어링	O	
수석부회장	황선우	금성소방산업㈜	O	
수석부회장	이원강	(주)청우이엔지	O	
수석부회장	김희택	프라임방재(주)	O	
부회장	최영훈	경원소방(주)	O	위임장
상임부회장	김종구	소방시설관리협회	O	
총무이사	김우창	(주)승진방재기술단	O	
이사	김선범	(주)새서울엔지니어링	X	
이사	고광웅	동화지엠㈜	O	
이사	이상환	현대방재기술	O	
이사	김인주	유일티엔에스(주)	O	위임장
이사	송재동	(주)서진방재엔지니어링	O	위임장
이사	김성한	한양소방안전주식회사	O	
서울지회장	김일규	(주)명신화이어이엔지	O	
부산지회장	강낙관	(주)참조은이엔지	O	위임장
대구경북지회장	오창현	한국방재㈜	O	위임장
인천지회장	정진규	원우방재㈜	O	위임장
울산경남지회장	김남일	미래방재산업(주)	O	위임장
경기북지회장	김형찬	(주)화이어캡스경기북	X	
경기남지회장	김진광	에스에스이엔씨주식회사	O	위임장
강원지회장	주현철	조은엔지니어링(주)	O	
충청지회장	임영목	(주)대진방재	O	위임장
호남제주지회장	장동태	(주)효산소방	O	
이사회 총원 23명 중 21명 참석(위임장 9명 포함)				

(사)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기타사항

◦ 붙임 : 2018년도 임시 이사회 “회의자료”

: 이사회 참석자 명단

의장은 상기와 같이 토의안건 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이에 따라 위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정관 제26조(회의록 등)에 따라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그 회의의 구성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다.

2018년 5월 29일(화)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회회의장

남영욱 (회장)

이 사

최종우 (이사)

이 사

장동태 (이사)

위 임 장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귀하

본인(위임하는 자(업체))은 2018. 5. 29(화) 개최하는
2018년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어, 본인의 권리의무 일
체를 의장에게 위임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위임장
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일

위임하는 자(업체)

업 체 명 경주시 마포구 창전로 60(신수동, 6층),
경원소방주식회
성 명 대 표 이 사 최 영



TEL) 02 - 532 - 1191

FAX) 02 - 579 - 1194

※ 작성하신 위임장은 협회 Fax. 02-579-1194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귀하

본인(위임하는 자(업체))은 2018. 5. 29(화) 개최하는
2018년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어, 본인의 권리의무 일
체를 의장에게 위임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위임장
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위임하는 자(업체)

업 체 명 : 유얼터앤에스(주)

성 명 : 김 인 주



TEL) 02 - 532 - 1191

FAX) 02 - 579 - 1194

※ 작성하신 위임장은 협회 Fax. 02-579-1194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귀하

본인(위임하는 자(업체))은 2018. 5. 29(화) 개최하는
2018년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어, 본인의 권리의무 일
체를 의장에게 위임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위임장
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위임하는 자(업체)

업 체 명 : 127-81-85958
(주)서진방재
엔지니어링
성 명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구룡)
백대프라자 401
서비스 소방관리



TEL) 02 - 532 - 1191

FAX) 02 - 579 - 1194

※ 작성하신 위임장은 협회 Fax. 02-579-1194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입 장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귀하

본인(위임하는 자(업체))은 2018. 5. 29(화) 개최하는
2018년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어, 본인의 권리의무 일
체를 의장에게 위임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위임장
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위임하는 자(업체)

업 체 명 : 주식회사 이엔지

성 명 : 강 북 관 장

TEL) 02 - 532 - 1191

FAX) 02 - 579 - 1194

※ 작성하신 위임장은 협회 Fax. 02-579-1194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귀하

본인(위임하는 자(업체))은 2018. 5. 29(화) 개최하는 2018년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어, 본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의장에게 위임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위임하는 자(업체)

업 체 명 : 한국방재(주)

성 명 :

오 창 희



TEL) 02 - 532 - 1191

FAX) 02 - 579 - 1194

※ 작성하신 위임장은 협회 Fax. 02-579-1194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귀하

본인(위임하는 자(업체))은 2018. 5. 29(화) 개최하는
2018년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어, 본인의 권리의무 일
체를 의장에게 위임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위임장
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위임하는 자(업체)

업 체 명 : 원우방재(주)

성 명 : 정 진 유 

TEL) 02 - 532 - 1191

FAX) 02 - 579 - 1194

※ 작성하신 위임장은 협회 Fax. 02-579-1194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귀하

본인(위임하는 자(업체))은 2018. 5. 29(화) 개최하는
2018년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어, 본인의 권리의무 일
체를 의장에게 위임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위임장
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일

위임하는 자(업체)

업 체 명

성 명

610-81-79002

미래방재산업(주) 김 남 일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39(성안동)

건설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TEL) 02 - 532 - 1191

FAX) 02 - 579 - 1194

※ 작성하신 위임장은 협회 Fax. 02-579-1194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사)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귀하

본인(위임하는 자(업체))은 2018. 5. 29(화) 개최하는
2018년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어, 본인의 권리의무 일
체를 의장에게 위임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위임장
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일

위임하는 자(업체)

업 체 명 :

에스에스이엔씨(주)

성 명 :

김진승 (서명)

TEL) 02 - 532 - 1191

FAX) 02 - 579 - 1194

※ 작성하신 위임장은 협회 Fax. 02-579-1194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귀하

본인(위임하는 자(업체))은 2018. 5. 29(화) 개최하는
2018년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어, 본인의 권리의무 일
체를 의장에게 위임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자 이에 위임장
을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일

위임하는 자(업체)

업 체 명 : (주)대진방재

성 명 : 임영욱



TEL) 02 - 532 - 1191

FAX) 02 - 579 - 1194

※ 작성하신 위임장은 협회 Fax. 02-579-1194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